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9. 3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수완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(안 제1조)
- 정의 (안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 (안 제3조)
- 경제교육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(안 제5조)
- 교원연수 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)
- 시행규칙 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3조에서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,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경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경제지식 습득,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,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,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,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는 경제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7조에서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8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고금리 소액 대출의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